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63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 등(안 제119조 등)	3

I. 제출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

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Ⅲ. 검토의견

1.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 등(안 제119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각각 세분화하고, 그밖에 현행법의 인용조문 오류(제21조제2호→제21조제1항제2호)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 제21조제1항제2호----- ----- ----- ----- ----- ----- ----- ----- ----- -----.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1. 제10조제1항 단서·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제3항(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1항 단서·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1항 단서·제30조의2제1항 단서·제31조제1항·제33조·제35조제3항 단서·제39조의2·제39조의4제3항 단서·제42조제1항 단서·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5조제1항 단서·제52조제1항·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제54조제2항·제60조제1항 단서·제63조제1항 단서·제68조의3제1항 단서·제68조의4제1항 단서·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제77조의2제1항 단서·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현행	개정안
<u>항 · 제52조제2항 · 제53조의3제4항</u> <u>및 제5항 · 제59조제1항 및 제3항 ·</u> <u>제59조의2제7항 · 제61조 · 제68조</u> <u>제2항 ·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제</u> <u>72조 · 제73조 · 제74조제1항 · 제91</u> <u>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u> 3. <u>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u> <u>를 포함한다) · 제25조(제34조에서</u>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9</u> <u>조 · 제39조의8 · 제49조 · 제52조제</u> <u>4항 · 제58조 · 제67조 또는 제82조</u> <u>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u> <u>거짓으로 기록한 자</u> 4. <u>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u> <u>한 자</u> 5. <u>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u> <u>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2조</u> <u>제1항 후단 · 제60조제1항 후단 ·</u> <u>제76조제1항 후단 · 제77조의2제1</u> <u>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u> <u>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u> <u>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u> 6. (생략) 7. <u>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u> <u>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8. <u>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u> <u>받게 하지 아니한 자</u> <신설>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삭제>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	개정안
<u><신 설></u>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조치나 협력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 장애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신설>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 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한 자 또는 설계승인이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

현행	개정안
	<u>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2. <u>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u> 3. <u>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4. <u>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u> 5. <u>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u> 6. <u>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7. <u>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8. <u>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9. <u>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 10. <u>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9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별 부과금액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는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만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를 유형별 5단계로 세분한 뒤 위반 차수(3차)에 따라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실제 부과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예컨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이나, 시행령상 최소금액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1차 위반은 200만원으로 규정·부과되어,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금액 사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 >

법률 제119조							시행령[별표12]			
구분	금액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별 각 호 구분)					부과금액 (위반행위 유형별, 가벌성 및 위반 차수 기준)			
		제1호	제2호	제3호	...	제8호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1항	3,000만원 이하	○	□	◇	...	△	1단계	600만원	1,200만원	3,000만원
							2단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단계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4단계	300만원	450만원	900만원
							5단계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동 법 시행령 [별표12](참고1)에 규정된 각 위반 행위(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과태료 제재수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과태료 금액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수의 부과대상 행위가 중대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비난정도에 상응하도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¹⁾.

○ 아울러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서도 과태료 금액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하위법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²⁾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법제기준과 실제」(2024.5.), 국회사무처 p810 참조

2) 「과태료금액 지침」(2019.2.), 법제처 p14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설정할 때에는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구분 설정한다.

○ 과태료 금액을 세분하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하위법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

< 과태료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 >

현행§119①	개정안 제119조				
3천만원	①3천만원	②2천만원	③1,600만원	④900만원	⑤600만원
제1호 (신고미이행· 허위신고)	§15의2(§29·§34 준용 포함), §30의2①단서	§10①단서, §19 ③(§29, §34, §39의3, §44 준용 포함), §20①단서, §28①단서(§34 준용 포함), §30 ① 단서, §31 ①, §33①, §35 ③ 단서, §39의 4③단서	§42①단서	§15① 단서(§29, §34, §39의3, §44, §51, §69 준용 포함), §19 ③(§62, §69 준 용 한정), §52 ①, §53①단서· ②, §53의3①, §63①단서, §6 8의3① 단서, §68의4①단서, §71①·②, §78 ②, §95①	§19③(§51, §83 준용 한정), §39의2, §43① (§51, §62, §6 9, §83 준용 포함), §45① 단서, §53의3③, §54②, §60① 단서, §76① 단서, §77의2 ① 단서
제2호 (기술기준 안전 관리규정 등 각종 준수사항 위반)			§40②/§59의2 ⑦/ §91	§59①·③, §68 ②, §72/ §61 ①/§61③/§70 ③·④/§74①	§50①·③, §52 ②/ §53의3④ / §53의3⑤/ §73 / §106①
제3호 (기록미작성· 허위기록)			§18(§34 준용 포함), §25(§34 준용 포함), §39, §39의8	§67	§49, §52④, §58, §82
제4호 (명령 위반)				§80②	
제5호 (승인 없이 변경)		§28①후단(§34 준용 포함)	§42①후단	§60① 후단, §76① 후단, §77의2① 후단	§111⑤ 후단
제6호(상위검증 서류 위조 조작)	§15의2				
제7호 (대리자 미지정)					§53의3⑥
제8호 (교육 미이행)					§106③

-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동 개정안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상한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 부합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6호	600	1,200	3,000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사.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아.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자. 법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500	1,000	2,000
차.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카.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타.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파.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하. 법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더.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러.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머.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600	1,200	3,000
버.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400	800	1,600
서.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어.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400	800	1,600
저.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500	1,000	2,000
처.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커. 법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터.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400	800	1,600
퍼.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400	800	1,600
허.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400	800	1,600
고.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400	800	1,600
노. 법 제39조의2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도.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로.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모. 법 제4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200	300	600
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오.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조.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초.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토.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포.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200	300	600
호. 법 제5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구.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누.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두. 법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루. 법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무. 법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7호	200	300	600
부.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수.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0	300	600
우.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주. 법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400	800	1,600
추. 법 제6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300	450	900
쿠. 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투.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푸.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후.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그. 법 제6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느.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300	450	900
드.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르.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므.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브.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스.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으.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즈.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츠.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크. 법 제7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트. 법 제7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프.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흐. 법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300	450	900
기. 법 제7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니.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300	450	900
디.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리. 법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미.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300	450	900
비.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0	300	600
시.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이.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지. 법 제9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400	800	1,600
치. 법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키.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티.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200	300	600
피. 법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200	300	600